

공동연구 분석의뢰 확인서

Ver.01

연구과제번호	(수가 청구에 사용할 과제번호를 입력합니다.)								
연구과제명	(수가 청구에 사용할 과제명을 입력합니다.)								
감염유래 시료여부	☐ No. ☐ Yes (SNUH IBC 승인번호:)								
의뢰처	구분	과제책임자	과제담당자						
	성명								
	소속								
	연락처								
	E-mail								
의뢰내용	검체수량: (단위:)								
견적금액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석서비스 금액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동연구 금액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산대상금액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분석서비스로 의뢰 시 금액) ***** 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공동연구로 의뢰 시 금액) ***** 원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분석서비스와 공동연구 차액) ***** 원</td></tr> </table>			분석서비스 금액	공동연구 금액	정산대상금액	(분석서비스로 의뢰 시 금액) ***** 원	(공동연구로 의뢰 시 금액) ***** 원	(분석서비스와 공동연구 차액) ***** 원
분석서비스 금액	공동연구 금액	정산대상금액							
(분석서비스로 의뢰 시 금액) ***** 원	(공동연구로 의뢰 시 금액) ***** 원	(분석서비스와 공동연구 차액) ***** 원							
● 공동연구금액은 논문작성 등 공동연구 성과기준 충족을 전제로 적용되는 감면금액이며 성과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분석서비스 금액과 공동연구 금액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
공동연구 주의사항	1. 공동연구는 해당 실험실과 의뢰자가 공동으로 연구설계·실행·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생산된 연구결과(데이터, 분석결과 등)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저널 논문작성, 지적재산권(특허 등)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2. 공동연구로 진행 시 분석서비스에서 감면된 금액이 청구됩니다. 3. 논문작성 ① 공동연구를 통한 논문의 작성은 사전 논의를 통해 진행하고, 기여도와 참여도에 따라 해당 실험실의 authorship(공저자 또는 주저자)을 결정합니다. ② 논문 작성시 필요한 실험 및 결과에 대한 내용, figure 및 table 은 협의에 따라 해당 실험실에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. ③ 공동연구 분석 결과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실험실 담당자, 책임자 및 의뢰자가 서명하고 , 최종 서명날짜를 기준으로 1 년 이내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기본 투고 기한으로 합니다. 단, 협의된 기한(기본 1 년)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 경우, 최대 3 년 (결과보고서 최종서명날짜 기준)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④ 논문 투고기한 연장에 대한 협의 후 [공동연구 기한연장 협의서]를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합니다. ⑤ 논문 Acknowledgement 에 예시 또는 유사문구를 기재합니다.								

	예시: The authors thank [Specific Core Lab name] of the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(CMI),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, Seoul, Korea, for technical support. 4. 지적재산권 ①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(특허 및 기술이전)의 출원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실험실과 사전논의를 통해 진행합니다. ② 사전논의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주체 및 참여인원을 결정하되, 실제 기술적 기여를 기준으로 해당실험실에서 최소 1 인 이상이 공동발명자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 ③ 지적재산권 성과이행 기한은 논문작성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5. 공동연구 성과 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① 저널 투고확인서(Submission confirmation) 또는 메일확인서: 해당 실험실에 제출함으로써, 공동연구 성과 이행으로 인정합니다. ② 특허 출원서 접수증: 사본을 해당 실험실에 제출함으로써, 공동연구 성과 이행으로 인정합니다. 6. 공동연구 성과 기준 미충족시 정산 규정 ① 협의된 기간(기본 1년, 최대 3년)내에 논문 또는 특허 등으로 공동연구 성과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실험실은 의뢰자에게 분석서비스에 해당하는 분석비(기 납입된 공동연구 금액 제외)를 절차에 따라 청구합니다. ② <u>의뢰자는 본 조항에 따라 공동연구 성과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정산대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.</u> ③ 공동연구 분석의뢰 확인서와 관련 이메일 및 정산내역은 회계 증빙자료로 보관되며, 기관 내부감사시 제출될 수 있습니다.
서명	상기내용에 모두 동의하며, 공동연구를 의뢰하겠습니다. 의뢰자(과제책임자): (서명) 20 년 월 일
	상기내용에 모두 동의하며, 공동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. ***실험실 책임자: (서명) 20 년 월 일 ***실험실 담당자: (서명) 20 년 월 일

본 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을 시, 서명 후 회신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*****실험실 TEL: 02-2072-****